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 ①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②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 지급(군비부담)에 관한사항
 - ④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사항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간 조사계획(정기조사 매년 1회)에 관한사항
 - ⑥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사항
 - ⑦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등을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토록 하고있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안제3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지명 등을 규정함(안제4조)
-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제5조)
-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 규정함(안제6조)
- 위원회 심의사항관련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제7조)
- 위원회의 서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제8조)
-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제9조)
- 규정외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제1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2001년 당초예산 반영(수당)
-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붙임 군보게재 (2000. 10. 20 ~ 11. 13)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평창군 생활보장 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평창군수(평창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군소속 공무원중 환경복지과장 및 본청내 각 실과장으로 직제 순위에 의한 4인과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복지과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⑥ 생략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공 고

◎ 평창군공고 제2000-704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생활보호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20일

평창군수 권 혁 승

인

1. 제정이유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군생활보장사업등 중요사업에 대하여 군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심의·의결토록 함.
- 나. 위와 관련 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 (안제3조)
- 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지명 등을 규정함 (안제4조)
- 다.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5조)
- 라.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6조)
- 마. 위원회 심의사항관련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7조)
- 바. 위원회의 서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8조)
- 사.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9조)
- 아. 규정외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 11.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환경복지과장, 주소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전화 033-330-2361 FAX 033-330-2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평창군수(평창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군수가 위촉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군소속 공무원중 환경복지과장 및 본청내 각 실과장으로 직제 순위에 의한 4인과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복지과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